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3
----------	-------

발의연월일 : 2022. 7. 18.

발 의 자 : 이수진(비)·강민정·노웅래
송옥주·심상정·안호영
용혜인·유정주·윤미향
이용선·이은주·임종성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아울러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협약자치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행정관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하며 확대의 범위를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업종'으로 확장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지역 또는 산업·업종

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안 제3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구직 중인 자

다.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제36조의 제목 “(地域的 拘束力)”을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地域에”를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로, “勤勞者 3分の 2 이상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

官廳은”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는”으로, “地域에서”를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서”로, “團體協約을”을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行政官廳이”를 “노동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p>	<p>第2條(定義) ----- -----.</p> <p>1.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u>나. 구직 중인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u>다.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p> <p>2. ----- ----- -----</p>

동하는 者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 6. (생략)

第36條(地域的 拘束力) ① 하나의
地域에 있어서 從業하는 同種
의 勤勞者 3分の 2 이상이 하
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官廳은 당해 團
體協約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
權으로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당해 地域에서 從業하는
다른 同種의 勤勞者와 그 使用
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
을 적용한다는 決定을 할 수
있다.

② 行政官廳이 第1項의 規定에

----- . 다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
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3. ~ 6. (현행과 같음)

第36條(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① -----지역 또는 산업·업
종에-----근로
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는-----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서-----

-----단체협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② 노동위원회는-----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